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선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3월 3일
-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3. 제안사유

- 지금까지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에서 대행하던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심의 업무를 ‘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를 별도로 구성하여 담당케 하고,
-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기존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에서 대행하던 것을 ‘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에서 담당하도록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의2 ~ 안 제3조의4)
- 나. 기금집행을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. (안 제4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에서 대행하던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심의 업무를 ‘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를 별도로 구성하여 담당케 하고,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.
- 청소년육성기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6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등을 위해 1979년 설치된 것으로,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기금은 아니며, 2020년 기준 1,493,440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.

#### <청소년 기본법>

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**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**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·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제3항의 “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”를 삭제하고,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제2항제3호의 “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”을 “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- 현 시점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액이 적고 조례상 기금집행이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로 규정되어 기금 용도가 청소년장학금 지원에 국한됨. 이에 위원회 기능을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에서 대행해 왔음.

- 그러나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집행액이 확대되면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, 대행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- 또한 제2항제3호의 개정 내용은, 현행 조례는 기금운용관(여성가족정책관)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면, 위원장(행정부지사)에게 심의 안전 부의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바,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는 ‘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심의위원회’의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-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·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하고, 위원장은 ‘행정부지사’로, 부위원장은 ‘여성가족정책관’으로 하였으며, 위원은 청소년 분야,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토록 함.
-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에 따라,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함.

**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**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다수의 도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,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함.

- 안 제4조에서는, 제2항의 “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” 를 삭제함.
  - 현재까지의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은, 제4조제2항의 ‘이자수입금 범위 내 지출’ 규정에 묶여 기금사업은 연 2천만원(2020년 기준) 규모의 적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‘청소년장학금’ 에 국한된 지출을 해왔음.
  - 이에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일부 원금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 - 다만, 조례 개정 이후 청소년육성기금이 현행 청소년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발굴에 대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요구됨.
- 안 제5조에서는, 기금의 용도 중 제2항을 삭제함.
  - 이는 제2항의 “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 등을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” 가 기존 제1항제3호의 “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” 과의 중복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.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, 지금까지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에서 대행하던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심의 업무를 ‘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’ 를 별도로 구성하여 담당케 하고,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,
-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없음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현황

□ 개 요

- 설치근거 : 청소년기본법 제56조  
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목 적 :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
- 지원내용 :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대상 학자금, 직업훈련, 자립 정착금 지급
- 재 원 : 도 출연금, 이자수입 등

□ 연도별 지원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도	예 산 액	인원	지 원 액	비 고
2016년	12,000	21	10,500	장학금 지원 (1인당 50만원)
2017년	11,000	22	11,000	
2018년	12,500	25	12,500	
2019년	15,500	31	15,500	
2020년	20,000	40	20,000	

□ 연도별 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수입내역(A)				지출내역(B)		잔액 (C=A-B)	연도말 조성규모
	계	전입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사업비		
'16	210,821	200,000	9,432	1,389	10,500	10,500	200,321	1,179,424
'17	311,793	300,000	10,434	1,359	11,000	11,000	300,793	1,480,217
'18	11,327		11,327		12,500	12,500	-1,173	1,479,044
'19	23,294	-	20,395	2,899	15,500	15,500	7,794	1,486,838
'20	26,602		25,246	1,356	20,000	20,000	6,602	1,493,440